

하도급 4대 실천사항 (협력업체 공정한 선정)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리

2.1 “협력업체”라 함은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를 의미한다.

2.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2.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3.1 기본원칙

3.1.1 이 실천사항은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2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3.2.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 (갱신 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

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2.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 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여부
 -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 ⑤ 일정기간 동안의 중대재해 처벌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2.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 (1)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3.2.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3.2.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 당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7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 야 하고, 협력업체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8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